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 대한적십자사 제공 ◇

간호원의 권리와 의무 <1>



目 次

머릿말

국제간호협의회 결의

간호 도덕 규약

적십자 기본원칙

제네바 제협약(諸協約)

1. 제네바 협약이란.
2. 제네바 협약의 유래.
3. 제네바 협약의 목적.

— <다음호에계속> —

이것은 1970년 5월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서 책자로而出 펴낸 <Rights and Duties of Nurses under the Geneva Conventions of August 12, 1949>를 번역한 것입니다.
■ 1949년의 제네바 4 개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간호)요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원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에는 바로 모든 간호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자 · 崔殷範

머 릿 말

< 국제간호협의회 결의 > 196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ICN) 제13차 4년차 대회에서는 “간호에 적용되는 도덕 규약”의 서문(3항)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일절(一節)을 단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간호도덕 규약> “모든간호원은 적십자의 제원칙과 그리고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ICN대회 결의에 따라 간호원들은 새로운 과업과 의무를 지니게 될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러한 의무는 이미 존재하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와같은 간호원의 의무는 어떤 국가가 제네바제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즉시로 발효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제네바제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군대와 모든 의무요원과 민간병원의 요원들은 전시에 있어 통협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게 된다. 누구든지 의식적으로 또는 무지때문에 제네바제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바로 민간인으로서 또는 군대구성원으로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위배하는 것이므로 그는 혼란 있는 당국으로부터 자기의 행위에 대한 헌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에서 연유하고 또 그것을 속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의무요원”으로 호칭되고 있는 간호원들은 자신들에게 관계있는 제네바제협약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자에서는 그러한 간호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네바제협약 관계조항들의 요점(要點)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일반론으로서 우선 “적십자의 제원칙”의 요약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
의무인사과장
애니·퍼터(Anny Pfeifer)

적십자기본원칙

1. 인도: 전지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라

(주) 초기의 간약을 위한 것인데, 이 책자안에서의 설명에 있어 “적십자”라함을 “적신월”(赤新月)과 “적사자태양”(赤獅子太陽)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는 의욕에서부터 탄생된 적십자는 그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인류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전강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 상호간의 이해와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2. 공정: 적십자는 국적 인종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관하여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적십자는 오직 고난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가장 친근한 치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3. 종립: 적십자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있어 어느편에 가담하거나 또한 어떠한 때에라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성격을 지닌 논쟁에 개입하지 아니 한다.

4. 독립: 적십자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국내법규를 준수하여 자기나라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협조적 역할을 할 때에 있어 항상 적십자원칙에 충아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천지하여야 한다.

5. 봉사: 적십자는 자발적인 구호기관이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득의 욕망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6. 단일: 어떤 국가에라도 오직 하나의 적십자사단이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적십자사는 자기나라 영토의 전역에 걸쳐서 그 맡은바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보편: 적십자는 범세계적인 기구이며, 그 안에서 모든 나라의 적십자사는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상호협조에 있어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제네바 협약(諸協約)

1. 제네바협약 이란?

〈정의〉 제네바 협약이라 함은 주권국가간의 외교적 협정을 말한다.

〈외교회의〉 외교회의(外交會議)에 참석하도록 스위스연방정부에 의하여 초정된 각국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이 적십자국제위원회(ICRC)가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협약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기초한 문본(文本)을 놓고 심의하는 것이다. 이들 전권대표들은 각자 자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에 조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준〉 각국 정부로서는 일단 자국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 자국대표의 조인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비준(批准)이라고 하는데 그 것에 의하여 그 국가는 그러한 협약에 규정된 자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約定)하게 되는 것이다. 그후 그 국가로서는 이 협약을 시행하고 그것에 맞추어 필요한 입법조치도 취하며 또한 군대와 일반국민에게 그 협약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일도 하는 것이다.

〈가입〉 뿐만아니라, 어떤 협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국가도 후일에 가서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가입조치로써 그 국가도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는 약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125개(주1) 국가가 체약당사자(締約當事者)로 되어 있는(비준 또는 가입에 의하여) 1945년의

(주 1) 1970년 4월 1일 협재(역자주=1973년 4월 27일 협재는 134개국으로 증가됨)

제네바 협약은, 문자 그대로 범세계적으로 승인되고 또 발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에 관한 공식문서는 스위스연방정부에 기탁되어 동국정부는 개개국가의 새로운 가입사실을 제네바협약 체약당사국과 ICRC에 통고한다.

2. 제네바협약의 유래

〈솔페리노의 듀남〉 솔페리노 전쟁터(1859년)에서 아무런 간호나 보호도 받음이 없이 유기된 수천 수만의 부상자들의 광경은 「앙리·듀낭」의 마음 속에 특출한 생각(주2)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것은 그뒤에 다음과 같이 급속하게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주3).

〈적십자사〉 첫째, 모든 나라에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내단체(주4)의 설립.

〈국제조약〉 둘째, 그러한 전쟁희생자 및 그들의 간호와 치료를 책임진 요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주5)의 제정.

이와같은 두가지 측면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상호보충적인 것이다. 사실 제네바협약의 보호가 없이 과연 어떻게 유효한 의료적 원조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적절한 간호와 의료를 보장할 수 없는 상병자 보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864년의 첫협약에 의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및 병자들에게 보장된 보호는 1899년에 있어서의 둘째 협약으로 해전(海戰)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주 2) 「앙리·듀낭」서 “솔페리노의 회고” (최은범역 : 삼중
당빌행=역자주)

(주 3) 1863년 제네바에서 “5인위원회” (ICRC의 전신)의 구성 및 최초의 적십자회의 개최

(주 4) 1863년—국내적십자사들이 처음으로 설립

(주 5) 1864년—외교회의 개최 및 최초의 제네바협약 체결

<1864년 : 제1협약 성립>

<1899년 : 제2협약 성립>

<1929년 : 제3협약 성립>

<1949년 : 제4협약 성립>

또 1929년에 새로 제정된 세제 협약에 의하여 또
로의 대우문제가 규제되게 되었다. 그리고 근래
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를 3개 협약을 개정하고 보
완하며 또 나아가서는 민간인에 관한 새로운 협약
을 제정하는 작업이 1949년에 열린 의회(주 6)
에 맡겨졌다 것이다. 이 회의는 원래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를 협약들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호칭되고 있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

I.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
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II.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III.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IV.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
약

이들 4개 협약에 대한 122개 주권국가 (1973년)

4. 현재 134개국=역자주)들의 비준으로 이 협약

(주 6) 본래 1940년 1월에 조립되었으나 제2차 대전발발로 인
하여 못 열렸던 것임.

들은 문자 그대로 법제계적으로 승인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제네바협약의 목적

<협약의적용> 각 협약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매우 구체화된 법주의 사람들은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인도적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육군, 시설, 장비, 지대 및 표장은 협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하고 또 오직 협약에 규정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봉사만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제공하는 봉사 때문에 상병자 자신들과 동일한 보호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 협약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직 엄격한 점은 이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그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간호요원들로 하여금 제네바협약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그들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중요한 조문들을 발췌하는데 이것들은 불어판 원문(주 7)에 근거하였다. <계속>

(주 7) 각 협약 및 조문의 숫자를 표시할 때 조자는 「로
마」 숫자로 후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표기함.

△ 영어 강좌 안내 △

본회에서는 취업 및 이민으로 해외에 나가고자 계획중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어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RN반은 새로운 교재로서 보다 짜임새있고 충실히 내용으
로 보완하였읍니다. 최근 미국의 RN시험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교재가 비교적 이해하
기 쉽고 내용이 좋아 이를 추가로 보충하기로 하였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매월초부터—매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장소 : 본회 강의실

시간 : (오후5시—6시 30분)